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2015. 2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머 리 말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고령화와 저금리 지속에 따라 보험회사의 위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국제적인 감독원칙에 따라 국내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지고 있고, 보험회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국제회계기준 개정안이 2015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의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감독원칙이나 국제회계기준은 나름의 목적이 분명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국내 감독 제도는 국내 보험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제도 간 상호 작용에 따라 새 제도의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라는 새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현재 국내 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와 시가평가 회계기준의 최초 적용과 관련된 현안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보험회사가 미래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2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목차

요 약 / 1

I. 서론 / 7

1. 연구목적 / 7
2. 선행연구 / 8
3. 연구범위와 방법 / 10

II. 자본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 12

1.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 12
2. 국제기준 준수 요구 증대 / 14
3.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 15
4.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로드맵 / 17

III. 국내 보험산업 현황 / 21

1. 저금리와 저성장 / 21
2. LAT와 손실계약 / 28

IV. IFRS와 RBC 연계방안 / 32

1. 손실계약과 phase 2 / 32
2. phase 2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 35
3. 자본 조정을 통한 지급여력 평가 / 40

V. 결론 및 시사점 / 45

| 참고문헌 | / 48

| 부록 | / 52

■ 표 차례

〈표 Ⅱ-1〉 RBC 규제강화 계획(2010. 10) / 18

〈표 Ⅱ-2〉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로드맵 초안(2014. 3) / 19

〈표 Ⅱ-3〉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로드맵 최종(2014. 7) / 20

〈표 Ⅲ-1〉 국내 보험산업 주요 지표 / 28

〈표 Ⅲ-2〉 23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구성별 LAT 결과 / 29

〈표 Ⅳ-1〉 유럽 보험회사의 자본 구조와 금리민감도 / 43

■ 그림 차례

- 〈그림 Ⅱ-1〉 건전성 규제의 목적: 시장 경쟁과 보험금 지급능력 / 12
- 〈그림 Ⅱ-2〉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 13
- 〈그림 Ⅱ-3〉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기준 / 14
- 〈그림 Ⅲ-1〉 국고채 시장금리(2000. 10~2014. 9) / 21
- 〈그림 Ⅲ-2〉 생명보험의 금리역마진 수익 구조(2011. 4~2012. 3) / 22
- 〈그림 Ⅲ-3〉 생명보험회사 RBC 요구자본 구성비 변화 / 24
- 〈그림 Ⅲ-4〉 보험회사 보유채권 듀레이션과 위험가중자산비율 추이 / 25
- 〈그림 Ⅲ-5〉 장기보험의 보험료적립금 구성비(2013년) / 26
- 〈그림 Ⅲ-6〉 금리확정형 잔여 만기와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
구성비(2012년) / 27
- 〈그림 Ⅲ-7〉 보험료 성장률 분기별 추이(2003. 6~2014. 6) / 27
- 〈그림 Ⅲ-8〉 생명보험의 LAT 결과와 회계처리 / 30
- 〈그림 IV-1〉 보험부채의 시가(IFRS 4 phase 2) / 33
- 〈그림 IV-2〉 보유계약에 대한 시가평가(phase 2) / 34
- 〈그림 IV-3〉 장래결손 반영 직후의 지급여력 평가(RBC 강화 영향 배제) / 36
- 〈그림 IV-4〉 phase 2에 의한 시가평가 할인율: 상향식과 하향식 / 38
- 〈그림 IV-5〉 보험부채의 측정과 손익 인식 / 39
- 〈그림 IV-6〉 장래이익의 가용자본 인정 / 42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Korean Solvency System under the IFRS 4 phase II

In July 2014,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FSC)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announced their roadmap for the advancement of solvency system, which aims to align with the IAIS Insurance Core Principles. The roadmap focuses on the strengthening of risk-based capital requirements and the capital adequacy test under IFRS 4 phase II which stipulates the economic valuation of insurance liabilities.

However, its impact of the IFRS economic valuation on the capital adequacy test of an insurer and its preparation period are not fully considered in the plan. Based on the results of liability adequacy test (LAT) in IFRS 4 phase I, the implementation of IFRS 4 phase II is expected to lead a majority of Korean life insurers to struggle against the significant decline of their RBC ratios. These effects are largely due to the first application of IFRS 4 phase II to existing contracts. Phase II requires insurers to immediately recognize expected losses from existing onerous contracts while profits expected from existing contracts should be retained in insurance liabilities before the transfer of service.

We suggest that RBC available capital be adjusted by the expected profits to the extent of the expected losses. Also we support the gradual strengthening of the LAT in the roadmap although it is not sufficient for the soft landing of the roadmap. Last but not least, we recommend the financial authorities t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market competition and the financial strength of insurers.

요 약

I. 서론

- 금융당국은 2014년 7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 2012년 금융당국은 RBC 요구자본 산출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RBC 강화계획을 발표
 - 2014년 3월 RBC 정량평가 일정을 재조정하고 정성평가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을 포괄하는 로드맵 초안을 발표

- 로드맵에 따른 규제 변화가 보험회사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보험회사가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이 보고서는 IFRS 보험부채 시가평가 정보를 활용한 지급여력 평가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찾고자 함.

- 연구의 범위는 IFRS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 정보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에 한정하며, 시가평가가 RBC 요구자본에 미칠 영향을 다루지는 않음.
 - IFRS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한편으로는 RBC 가용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부채라는 위험노출규모의 변화로 RBC 요구자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가용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II. 자본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는 자유로운 보험료 결정과 투자 활동을 통해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대신 보험회사에 충분한 준비금 적립과 자본 보유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옴.
 - 보험회사 지급능력 유지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경쟁과 건전성 규제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
- 현재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다국적 보험그룹의 자본규제기준 마련임.
 -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경우 시스템위험이 있는 보험그룹에 대한 기본자본 및 추가자본 규제와 시스템위험이 없는 보험그룹에 대한 세계 공통의 건전성 규제 제정 작업이 진행 중
 -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건전성 감독이 국제보험감독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집중됨.
- 개별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이는 국내 금융당국의 2014년 종합로드맵에도 그대로 반영됨.
 - 국제보험감독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은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에 근거하여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평가할 것을 제시
 - 2014년 7월 금융당국은 IFRS 보험부채 시가평가 대응을 RBC 강화 계획과 더불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에 반영

Ⅲ. 국내 보험산업 현황

- 국내 보험산업의 향후 환경 변화를 저금리와 저성장 및 인구고령화라 할 때, 보험회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위험과 신용위험을 인수해야만 할 것임.
 - 국내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상당한 금리역마진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보전할 충분한 보험영업이익이 필요한 상황
 -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하여 국내 보험회사는 금리위험을 최대한 축소하여야 규제 변화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임.

- 저금리는 국내 보험회사가 자산 만기를 늘리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며, 저성장으로 신계약 성장이 영향을 받을 경우 국내 보험회사가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기도 어려워 금리위험 축소에 한계
 - 안정적인 장기채권의 공급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로 낮아진 자산운용 수익률 개선 압박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현재의 자산 듀레이션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 보험료 성장이 초회보험료보다 계속보험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국내 보험회사의 금리연동형 판매를 통한 부채 듀레이션 축소 전략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 시가평가에 준하는 부채 적정성 평가 결과, 국내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장래이익이 예상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상당한 손실계약이 있어서 IFRS 4 phase 2 전환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2013년 기준 부채 적정성 평가 결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각각 29조 원과 20조 원의 장래이익이 예상됨.
 - 생명보험 장래이익 29조 원은 이익계약과 손실계약의 손익을 상계하여 산출된 값이나, phase 2는 손실계약의 손실 35조 원을 자본에 바로 반영할 것을 요구함.

IV. IFRS와 RBC 연계방안

1. 손실계약과 phase 2

- phase 2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행가치)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장래이익)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함.
 - 이행가치는 보험회사가 기대 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준비금임.
- phase 2의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상이한 상품구성 간의 손익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phase 1) 부채 적정성 평가와 큰 차이를 보임.
 - 장래손실이 예상되는 상품구성의 경우 현행 기준(phase 1)에서는 장래이익이 예상되는 상품구성과 합하여 손실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나, phase 2는 장래손실을 우선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
 - 2013년 기준으로 손실계약이 존재하는 생명보험 보유계약에 대하여 phase 2 적용 시 자본 감소는 불가피

2. phase 2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 phase 2 회계정보를 RBC 지급여력 평가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평균 RBC 비율은 286%에서 115%로 급락하게 됨.
 - 2018년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2013년과 같다고 할 때, 23개 보험회사 중 8개사는 보유계약에 대한 회계기준이 phase 1에서 phase 2로 전환되는 것만으로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
- RBC 비율 급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phase 1의 부채 적정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나, phase 2 시행 전까지 자본을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2013년 자료에 기초하여 2018년 RBC 권고비율 15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phase 2 전환으로 인식해야 할 장래손실을 고려할 때 가용자본 58조 원 이외에 추가로 14조 원의 자본 확충이 요구되나,
- 14조 원 보전에는 연간 당기순익 3조 원을 모두 내부 유보하더라도 5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다른 제도 변경효과까지 고려한 추가 자본에 대응하려면 후순위채 발행요건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

3. 자본조정을 통한 지급여력 평가

- RBC 지급여력 평가에서 장래손실을 반영한 IFRS 자본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장래손실을 보전하는 한도 내에서 IFRS 보험부채에 포함된 장래이익을 지급 여력 평가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필요
 - IFRS 자본에는 장래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반영하고 있는 반면, 장래이익은 보험부채에 포함시킨 후 서비스 제공에 비례하여 인식하도록 함.
 - RBC 지급여력 평가에서는 장래손실에 대응하는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보유계약의 장래손실 반영에 따른 RBC 비율 급락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장래이익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보험료와 해지 시 장래이익의 소멸 문제가 있어서 장래이익을 100%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유동성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장래이익을 100%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해외사례에서 관찰되고 있음.

V. 결론 및 시사점

-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는 IFRS와 같은 일반회계나 RBC와 같은 지급여력 평가 모두에서 채택되고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IFRS 채택 여부와 별개로 지급여력 감독은 시가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준임.
 - 따라서 IFRS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체제를 전제로 하여 자본조정 관점에서 지급여력 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

-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를 도입함에 있어서 IFRS와 RBC 양 측면에서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제안함.
 - 첫째, 금융당국이 제시한 바와 같이 부채 적정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가용자본의 정의, 손익상계와 관련한 상품구성, 할인율을 포함한 평가기준 조정을 검토할 필요
 - 둘째, 우선 RBC 지급여력 평가에서 장래이익을 장래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다음으로 그 인정 한도를 기본자본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여 보험회사 자본의 질을 높이고 금리민감도를 줄일 필요

- 보험회사가 RBC 비율이라는 결과보다는 위험관리 과정에 집중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함이 바람직함.
 - IFRS는 장래이익이 확보되지 않는 손실계약 정보를 재무제표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참가자가 보험회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할 것임.
 - 보험료, 투자, 준비금 및 자본 감시를 금융당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금융당국과 시장이 역할을 분담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임.

I. 서론

1. 연구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1.5배 (150%) 이상 높은 수준의 RBC 지급여력비율 유지를 보험회사에 권고하고 있고,¹⁾ 2012년에는 RBC 요구자본 산출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RBC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향후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RBC 강화계획보다 포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²⁾ RBC 요구자본 산출기준 강화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짧은 기간 안에 자본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RBC 강화계획은 예정보다 지연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4년 3월 RBC 정량평가 일정을 재조정하고 정성평가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 2nd Exposure Draft, 이하 phase 2)을 포괄하는 로드맵 초안을 제시한 후 2014년 7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동 로드맵은 자본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8년 이후 전개될 보험회사 지급여력 평가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로드맵에 따른 규제 변화가 보험회사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보험회사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대응수단은 충분

1)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여부로 판단함. 다만, 보험종목 추가 허용, 자본감소(감자) 허가, 후순위채무의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음.

2) 김해식·조재린(2013)과 조재린 외(2014) 참조.

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로드맵의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추가되어야 선진화 로드맵에 따른 새로운 감독 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IFRS 보험부채 시가평가정보를 활용한 RBC 지급여력 평가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전통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반성에서 나온 시스템위험 감독 강화이다(Osinski 외 2013). 이에 따라 개별 재무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시스템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 자본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이 없는 보험산업의 경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가 다국적 보험그룹을 대상으로 미시건전성 규제와 시스템위험에 관한 거시건전성 규제로 나누어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IAIS 2013).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규제의 경우 IAIS는 보험핵심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에 따라 건전성 감독을 수행할 것을 모든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이 제시한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과 아시아 각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변화도 미시건전성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재린 외(2013; 2014)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RBC 강화계획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며 로드맵의 선 후에 있어서는 시가평가 대비가 우선이고, 이후 정량평가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조영현(2014)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비할 보험회사의 자본관리수단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Baltensperger 외(2007)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흐름이 보험산업의 사업모형 특

성을 고려해야 하며 은행의 BIS 3을 일방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verinson · Yermo(2012)와 Swiss Re(2010)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기관투자자와 장기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전성 규제 및 회계기준의 변화가 오히려 장기투자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석영(2014)은 보험회사의 왜곡된 수익 구조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가 여전함을 지적하고 있어, 건전성 규제에 있어서 보험료 및 투자 규제와 준비금 및 자본 규제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개별 보험회사의 미시건전성 규제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요구다. IAIS가 2011년 서울 총회에서 제정한 ICP는 보험자산과 보험부채의 가치를 시가로 산출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2014)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을 통해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조재린(2012)과 조재린 외(2014)는 지속적인 금리 하락이 보험부채평가에 줄 영향 분석을 통해 할인율 하락으로 상당수 보험회사의 RBC 비율이 급락할 가능성을 제시하여 할인율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김해식 외(2014)는 보험부채의 가치평가를 phase 2에 의존할 경우 지급여력 평가 관점에서 회계 조정(감독회계)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가용자본 인정과 관련하여 Al-Darwish 외(2011)는 Solvency II가 보유계약의 장래이익(EPIFP: Expected Profits in Future Premiums)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장래이익과 관련하여 phase 2의 논의와 RBC 지급여력 평가에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Khang(2014)은 국내 보험회사가 저금리와 저성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며, 그 결과 국내 보험회사는 더 많은 금리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성장을 위해서는 신용위험과 보험위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인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한편으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위험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국내 보험회사가 경험하고 있는 일부 보유계약의 이차역

마진을 포함한 예상손실이 단기간 내에는 해결이 쉽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phase 2 정보를 활용한 지급여력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보유계약의 존재는 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제약조건이다.

3. 연구범위와 방법

조재린 외(2014)가 RBC 강화 영향과 할인을 효과 분석에 기초하여 “선 시가평가 후 RBC 강화”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 보고서는 최근 발표된 금융당국의 종합로드맵에 제시된 RBC와 IFRS의 연계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연구 범위를 IFRS 시가평가정보를 활용한 RBC 지급여력 평가에 한정한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지급여력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시가평가정보 활용 방식에 따라 보험회사 RBC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IFRS-RBC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변동과 RBC 지급여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시가평가에 따른 요구자본의 변화 등은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제Ⅱ장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를 다룬다. 국제적인 건전성 감독의 흐름은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임을 살펴본다.

제Ⅲ장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에 따른 국내 보험산업의 수용능력을 미리 살펴본다. 국내 보험산업의 자산-부채 구조와 수익성,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결과 등을 통해 보험회사, 특히 장기보험의 금리역마진과 금리위험관리 문제를 살펴본다.

제Ⅳ장은 IFRS 보험부채 시가평가정보에 기초한 RBC 지급여력 평가의 영향을 분석하고, 새 지급여력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IFRS와 RBC에서의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와 IFRS와 RBC에서의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의 분석을 토대로 IFRS 4 phase 1에서 LAT의 단계적 강화와 RBC의 가용 자본 조정이 모두 필요하며, 무엇보다 phase 2의 보험부채에 포함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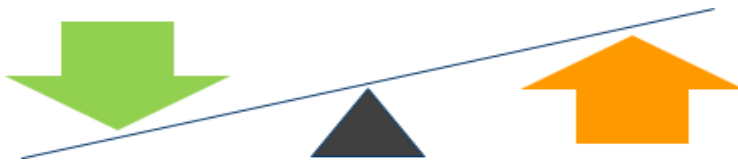
Ⅱ. 자본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1.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건전성 규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위험에 대한 대응이다.

첫째, 개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는 보험료와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보험회사의 자유로운 보험료 결정과 투자 활동을 보장하여 활발한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충분한 준비금 적립과 자본 보유를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Baltensperger 외 2007). 이렇듯 건전성 규제는 일방적인 규제완화나 규제강화가 아니라 시장경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보험금 지급능력 유지에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경쟁 촉진과 보험금 지급능력 유지 간에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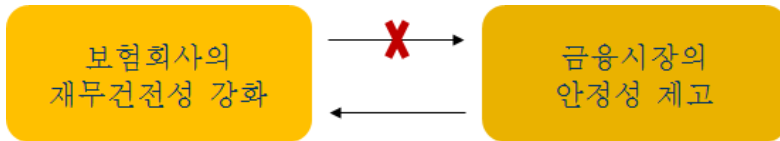
〈그림 Ⅱ-1〉 건전성 규제의 목적: 시장 경쟁과 보험금 지급능력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건전성 규제가 1990년대에는 가격자유화를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본규제 강화를 통

해 보험금 지급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사업비차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의 수익구조는 그 원인이 상당 부분 보험료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로부터 비롯되고 있어서(김석영 2014) 국내 건전성 규제는 보험금 지급능력 강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경쟁을 위축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조재린 외(2013)는 정량평가에 치우친 2012년 RBC 강화계획은 정성평가와 phase 2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 보험료 등 다른 규제와의 조율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고, 김석영(2014)은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림자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림 II -2〉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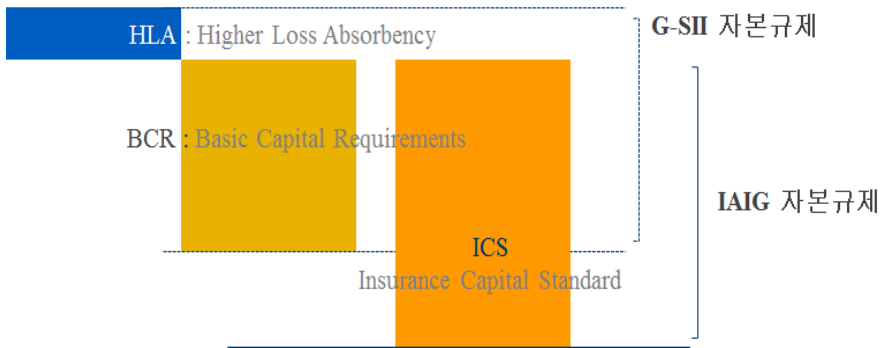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반드시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지는 않음을 경험했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이 분명해진 것이다(Osinski 외 2013). 이에 따라 시스템위험이 높은 은행이나 보험회사(G-SIB or G-SII: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or Insurers)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2013년 7월 9개 보험그룹이 G-SII로 선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자본 논의가 본격화되었고(FSB 2013),³⁾ 자본 추가의 기준이 될 기본 자본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공통 기준이 없던 보험산업에서 공통 자본규제기준 제정 작업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3) G-SII 후보로 선정된 보험그룹은 Allianz SE,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Assicurazioni Generali S.p.A., Aviva plc, Axa S.A., MetLife, Inc., Ping An Insurance (Group) Company of China, Ltd., Prudential Financial, Inc., Prudential plc 등 9개사임.

2. 국제기준 준수 요구 증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국제기준의 제정과 준수를 정착시키는 집행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FSB가 IAIS나 BCBS와 함께 국제기준을 만드는 기구라면, IMF의 역할은 “금융시장 안정성 평가(FSAP: Financial Sector Stability Assessment Program)”를 통해 국제기준에 따라 각국이 금융회사를 잘 감독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감독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기준 준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3〉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기준



주: ICS보다 BCR을 작게 표시한 이유는 BCR이 ICS보다 단순화된 형태로서 BCR에 따라 산출된 요구자본량이 ICS의 요구자본량보다 작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임.

보험산업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국제기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다국적 보험그룹을 대상으로 세 가지 국제 공통의 자본규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ICP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기준은 시스템위험 유무를 기준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G-SII를 대상으로 시스템위험을 반영한 기본자

본(BCR: Basic Capital Requirements)과 추가자본(HLA: Higher Loss Absorbency)에 관한 기준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스템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다국적 보험그룹(IAIG: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⁴⁾에 적용할 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BCR과 ICS는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기본자본규제라는 점에서 제정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IAIS는 다국적 보험그룹에 적용할 위의 세 가지 기준을 2016년까지 마련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G-SII에 적용할 자본규제기준 중 BCR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한 후 여기에 추가할 HLA 시행방안을 2015년까지 마련하여 2017년 기준으로 선정된 G-SII에 대해 2019년부터 시스템위험에 따른 추가 자본(HLA)을 부과할 계획이다(FSB 2013). 또한, IAIS는 2016년까지 ICS를 마련하여 2년의 평가기간을 거친 뒤 2019년부터 적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IAIS 2013).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2020년 경에는 보험그룹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IAIG에 해당되는 보험그룹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자본규제 논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보험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가 국내 보험시장에 가지는 효과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다국적 보험그룹의 자회사 감독 등 제한적인 범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별 보험회사 자본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ICP 반영 문제는 2018년에 예정된 IMF의 FSAP 평가 및 phase 2 시행과 맞물려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3.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AIS는 기존 ICP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2011년 서울 총회에서 최종 확정했고, 각국은 ICP가 IMF의 금융시장 안정성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되면

4)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이승준(2012; 2013), 이승준·오병국(2011) 참조.

서 자국 보험감독규정에 ICP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ICP 원칙과 Solvency II 사례를 토대로 지급여력 감독을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개혁 작업(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ICP와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김해식·조재린 2012).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ICP 기준은 14, 16, 17의 세 가지다.⁵⁾ 세 원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시가(時價)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ICP 14 가치평가, ICP 17 자본적정성)와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관리 강화”(ICP 16 지급여력 평가 목적의 ERM)라고 할 수 있다.

ICP 17은 보험회사의 이익이 보험영업(부채)과 투자영업(자산)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평가하여 산출된 요구자본량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칙(ICP 17.1. Total Balance Sheet Approach)과 평가에 필요한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ICP 14는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일관성 있게 평가하여야 하고 보험부채의 경우 시가(Current Estimate)로 평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IFRS phase 2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원칙과 동일하다.

한편 2013년 IMF는 우리나라에 대한 FSAP를 통해 국내 보험감독이 ICP를 높은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IMF 2014a). 정량평가에서는 RBC 강화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회계에서는 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성평가에서는 RAAS를 적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ICP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IMF는 위험관리 능력이 성숙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문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현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ICP 준수에 관한 IMF의 세부 평가를 보면(IMF 2014b), ICP 14와 관련하여 보험부채의 원가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가평가 전까

5) ICP 내용은 IAIS 홈페이지(<http://www.iaisweb.org/>)의 Supervisory Material/ICP on-line tool 참조.

지는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ICP 17과 관련하여 그룹 감독에 관한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은 연결 RBC 제도의 도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ICP 16과 관련하여 IMF는 건전성 규제 강화 계획을 근거로 “대체로 준수”로 평가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13년 FSAP의 ICP 준수 평가는 재무건전성 강화계획과 IFRS 개정을 염두에 둔 조건부 평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18년 FSAP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시한 재무건전성 강화계획의 이행, 즉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체계의 마련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로드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감독규정에서 정한 RBC 비율의 1.5배, 즉 150% 이상 유지를 보험회사에 권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목표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10월에 처음으로 제시된 RBC규제강화 계획은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력 강화와 지급여력 평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목표로 2년 이내에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고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신뢰수준 99%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표 II-1〉 RBC 규제강화 계획(2010. 1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 모든 보험회사에 RBC 비율 150% 이상 유지 권고 (실질적 신뢰수준 상향 효과)					
(가용자본)					
2. 자본계층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					
3.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 가용자본에서 제외 (요구자본)					
4. 변액보험 보증위험액 산출 개선					
5. 위험계수 신뢰수준 상향					
- 보험위험(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 보험위험(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 금리역마진위험					
- 금리위험					
- 신용위험					
6. 위험상관계수 세분화					
7. 연결 RBC 제도					

자료: 허창언(2012) 참조.

그러나 RBC 비율 150% 권고제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사실상 감독규정보다 50% 추가된 요구자본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요구자본 산출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상향하는 RBC 강화계획은 요구자본을 실질적으로 41% 이상 높인다는 내용 이므로 보험회사가 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려면 자본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와 같은 규제 강화가 모든 보험회사에 일률 적으로 적용되는 정량평가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위험 관리를 유인하는 제도적 고려가 부족하고 IFRS 4 phase 2 도입에 따른 준비금 증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조 재린 외 2013).

이에 금융당국은 2014년 3월에 신뢰수준 상향을 최대 2015년까지 늦추기로 하고 손 해보험의 이연법인세 항목도 계속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보험회사의 자기관리를 강조하는 ORSA 도입과 그에 상응한 RBC 권고비율의 하향 조 정, 그리고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여 시장 의 종합적인 로드맵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

〈표 II-2〉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로드맵 초안(2014. 3)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 정량평가(pillar 1)					
신뢰수준	보험/금리위험	신용위험			
상관계수		시행			
장수위험		검토			시행
부채듀레이션 확대		검토	단계적 시행		
운영위험		검토	시행		
변액보증해지	검토	시행			
내부모형			시범운영	시범운영	시행
2. 정성평가(pillar 2)					
ORSA	검토	시범운영	시행		
권고비율 하향		150→120~130%			
3. 시장공시(pillar 3)					
공시제도	검토	시행			
4. 부채시가평가					
phase 2 준비	단계적 준비				시행
LAT 개선	단계적 시행				폐지
장기보험 IBNR	단계적 시행				
변액보증준비금	시행				

자료: 금융감독원(2014).

2014년 7월 금융당국이 최종 확정된 로드맵은 운영위험 정교화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으나, 3월 초안에 있었던 RBC 권고비율의 하향 조정을 은행 BIS 3과 유사한 “자본확충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동 제도가 은행의 자본보전 완충자본(Capital Buffer) 개념과 유사하다면(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4), 자본확충 인센티브제도는 감독규정상 최소 지급여력비율 100% 초과 또는 권고비율에 상응하는 자본확충을 의미하므로 현행 RBC 권고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이를 기준으로 배당 등에 제한을 두는 경우⁶⁾ 오히려 권고비율에 미달하는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재량적 개입이 될 수 있다. RBC와 같은 정량평가에 ORSA와 같은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자본을 요구하는 접근방식이 국제 규제의 흐름이고 감독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지급여력비율과 상응하는 감독조치를 규정화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6) 현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면 주주배당이 가능함.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처리)④와 제7-17조(경영개선권고)② 참조.

별도의 RBC 권고비율을 설정하고 보험회사에 일률적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

〈표 II-3〉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로드맵 최종(2014. 7)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 정량평가(pillar 1)					
신뢰수준 상향	보험/금리위험	신용위험 50%	신용위험 100%		
상관계수		시행			
연결 RBC	시범운영	시행			
변액보증위험해지	방안수립	시행			
장수위험		방안수립			시행
부채듀레이션		방안수립	단계적 시행		
운영위험		방안수립	시행		
내부모형		방안수립	시범운영	시범운영	시행
자본확충인센티브		방안수립	시행		
2. 정성평가(pillar 2)					
ORSA		시범운영	시범운영	시행	
3. 시장공시(pillar 3)					
공시제도	방안수립	시행			
4. 보험부채 시가평가					
IFRS4 phase2	도입 준비				시행
LAT	단계적 시행				폐지
장기보험 IBNR	단계적 시행				
변액보증준비금	시행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4).

한편, 로드맵은 phase 2에 기초한 책임준비금 평가를 통해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체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IFRS가 원칙주의 회계기준인 만큼 별도의 해석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행적으로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는 보험산업에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반회계인 IFRS의 시가정보를 지급여력 평가에 반영하는 것인 만큼 회계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금융위기와 같이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가평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보험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RBC 비율이 급락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감독 수단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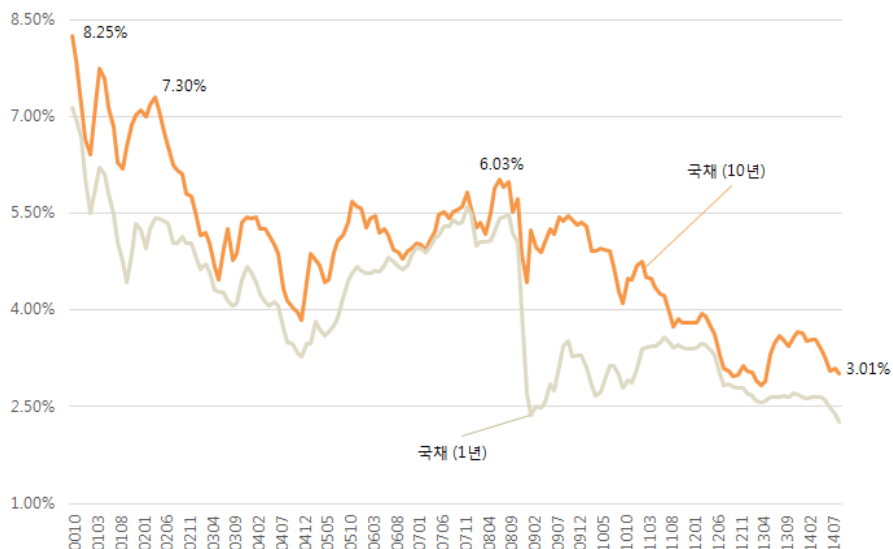
Ⅲ. 국내 보험산업 현황

1. 저금리와 저성장

가. 금리역마진과 수익 구조

외환위기 이후 시장금리는 200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00년 8.25% 수준에서 2004년 3.85%까지 하락 후 2008년 6.03%까지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4년 9월 현재 3.0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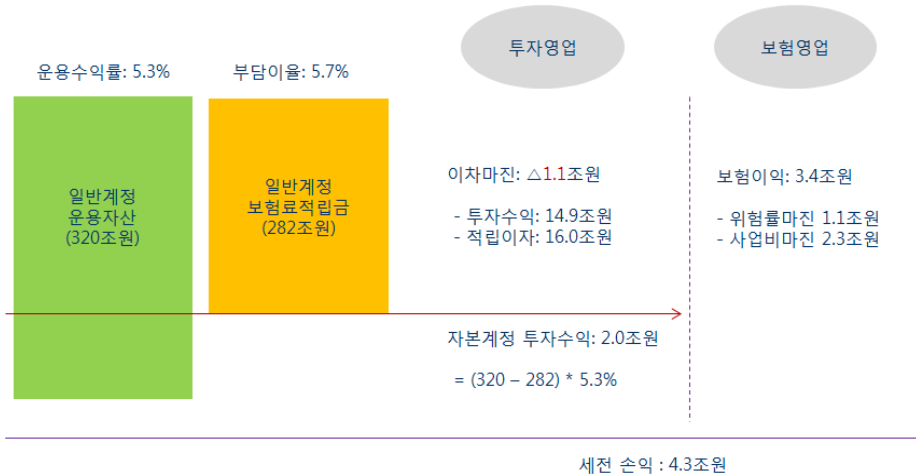
〈그림 Ⅲ-1〉 국고채 시장금리(2000. 10~2014. 9)



자료: 한국은행 ECOS.

그 결과, 장기보험의 수익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예정사업비 초과 지출에 따른 손실을 투자영업 부문의 금리 마진(이차마진)과 보험영업 부문의 위험률 마진으로 보전하는 형태였으나, 구조조정과 저금리를 거치면서 사업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투자영업 부문에서는 금리 마진이 축소되거나 생명보험의 경우 금리역마진이 발생하는 형태로 바뀌었다(이원돈 2003).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보험영업이익, 특히 사업비 마진에 크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가 고착화되었는데, 여기에는 건전성 규제 변화의 불균형도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Ⅲ-2〉 생명보험의 금리역마진 수익 구조(2011. 4~2012. 3)



자료: 조재린(2012).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방향을 보험료와 투자를 직접 규제하던 방식에서 준비금과 자본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예정이율과 위험률, 사업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효용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충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자본 보유를 통해 보험금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규제방식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보험료 규제 완화는 그림자 규제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보험회사의 위험률 결정은 자유롭게 못하고 예정이율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하여

수익 구조가 사업비 마진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익 구조는 신계약 중심의 영업관행을 부추기고 보험계약자의 조기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위험률 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에 비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석영2014).

반면,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준비금 및 자본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준비금의 경우 2000년에 표준이율 및 표준책임준비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준비금 원가와 시가의 괴리를 보정하기 위한 보험부채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⁷⁾ 자본규제의 경우 1999년 유럽식 지급여력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 2009년 RBC 지급여력 규제로 강화되었고, 최근에 발표된 재무건전성 로드맵은 RBC 강화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결과적으로 준비금과 자본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는 불안정하고 보험회사 간 시장경쟁은 미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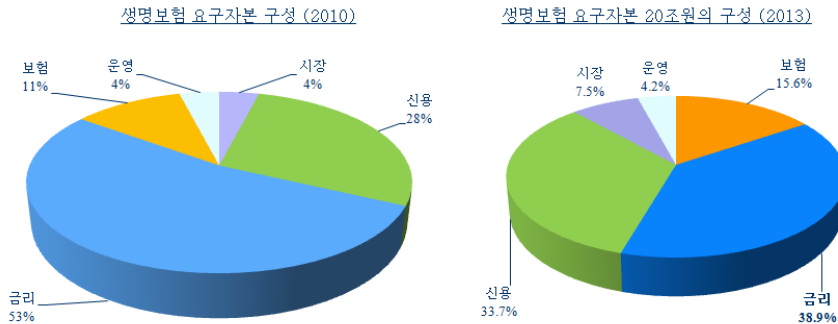
나. 금리위험 축소 필요성

보험회사가 이미 발생한 금리역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험영업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향후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산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거나 부채의 조달비용을 낮추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금리 하락에 따라 부채가치가 자산가치보다 크게 증가하여 자본이 감소할 가능성(금리위험)⁸⁾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금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투자영업이 이루어졌고 보험상품도 만기가 짧고 해지율이 높은 탓에 금리위험을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으나, 보장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시장의 주력 상품이 되고 저금리 환경에서 보유계약의 유지율도 높아지면서 금리위험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이원돈 2003).

7) 1999년 미국식 보험료결손제도(Premium Deficiency Test)가 도입되었으며, 2011년 IFRS 채택으로 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로 대체되어 시행 중임.

8) 현행 RBC규제의 금리위험 = (금리부자산 위험노출규모 * 자산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위험노출규모 * 부채듀레이션) * 금리변동계수, 금융감독원(2012a).

〈그림 Ⅲ-3〉 생명보험회사 RBC 요구자본 구성비 변화



자료: 김해식 외(2010); 조영현(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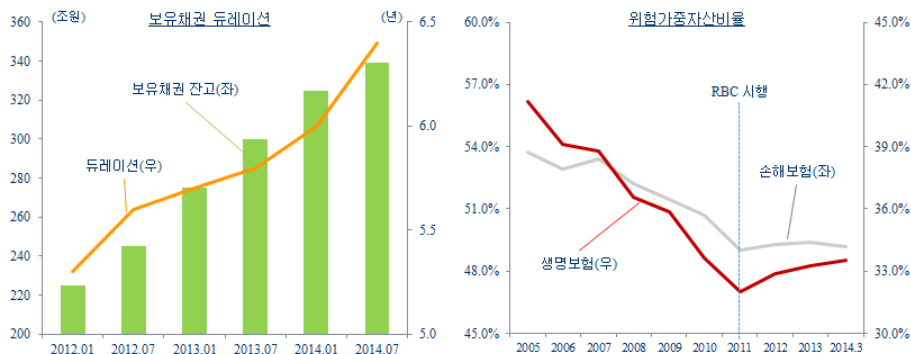
이에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듀레이션 갭)를 줄이는 방향으로 금리 위험 축소에 노력해 왔다. 먼저, 보험회사는 2000년대 이후 금리확정형 판매를 크게 줄이고 금리연동형 상품을 집중 판매함으로써 상품구성을 크게 바꾸었다. 또한 1999년부터 유럽식 지급여력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보험회사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꾸준히 줄여왔으며, 금리위험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RBC규제의 2009년 시범운행을 계기로 국채 등 장기안전자산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그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RBC 전체 요구자본 중 금리위험 구성비는 제도 도입 초기의 53%에서 2013년 39%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향후 보험시장을 저금리와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가 지배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보험회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신용위험과 보험위험을 인수해야만 할 것이고(Khang 2014), 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에 있어서 금리위험을 최대한 축소하여야 향후 RBC 강화 등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금리위험 축소의 한계

규제 및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장기자산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금리위험에 대한 신뢰수준 상향 조치 등 RBC 강화가 예정되어 있고 저금리에 따라 금리연동형 상품에서도 최저보증이율의 금리위험 노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장기채권을 꾸준히 늘려 왔다. 2014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 규모는 340조 원에 달하고 보유채권의 평균 듀레이션은 6년이 넘는다. 채권을 포함한 자산의 듀레이션은 5년 내외에 이르고, 반대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꾸준히 하락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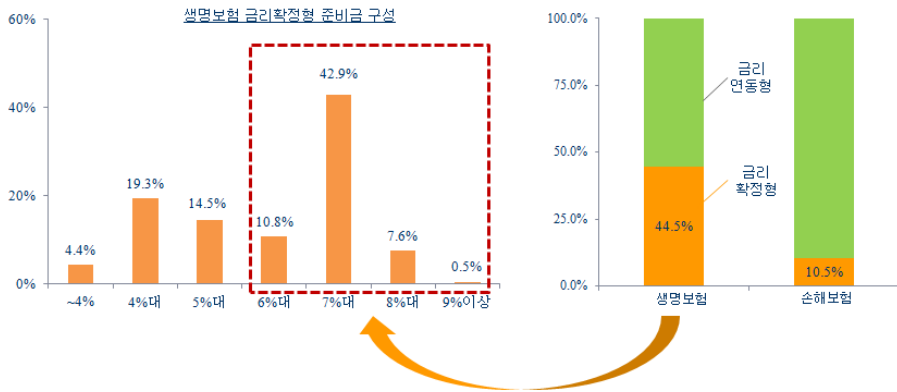
〈그림 Ⅲ-4〉 보험회사 보유채권 듀레이션과 위험가중자산비율 추이



자료: KB리서치(2014);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그러나 보험회사의 장기채권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발행 규모 자체가 크게 늘기 어려운 데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높아서 보험회사가 자산의 듀레이션을 더 늘릴 수 있을 만큼 장기채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문홍철·이병건 2013). 또한 2011년 이후 보험회사의 위험가중자산비율의 하락세가 주춤하거나 오히려 생명보험의 경우 다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수익률 개선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림 Ⅲ-5〉 장기보험의 보험료적립금 구성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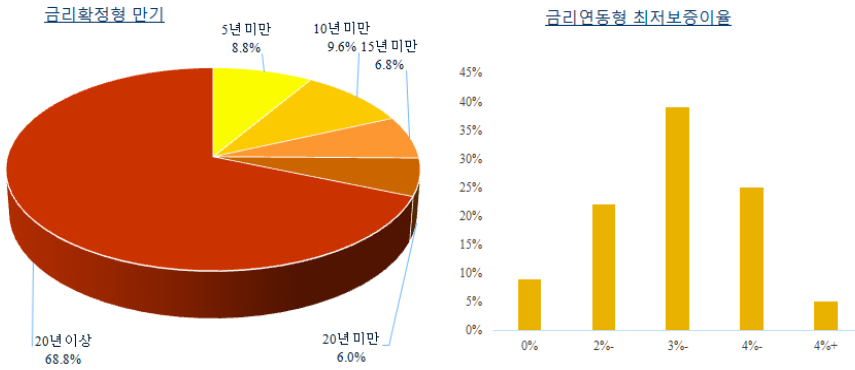
자료: 조재린 · 김해식(2014); 조재린(2012).

상품구성 측면에서 보면, 만기가 짧은 장기손해보험에 비해 생명보험의 금리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상품에 비해 금리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이후 보험회사가 금리연동형 판매에 집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 생명보험 전체 보험료적립금에서 금리확정형 준비금은 44.5%에 달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6% 이상의 고정금리를 확정이자로 지급하는 준비금이 61.8%(보험료적립금의 27.5%)에 달한다. 게다가 2012년 현재 금리확정형 준비금의 68.8%(보험료적립금의 30.6%)는 만기가 20년 이상 남아 있으며, 금리연동형 준비금의 30%가 3% 이상의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 금리연동형 준비금이 부채듀레이션을 오히려 늘릴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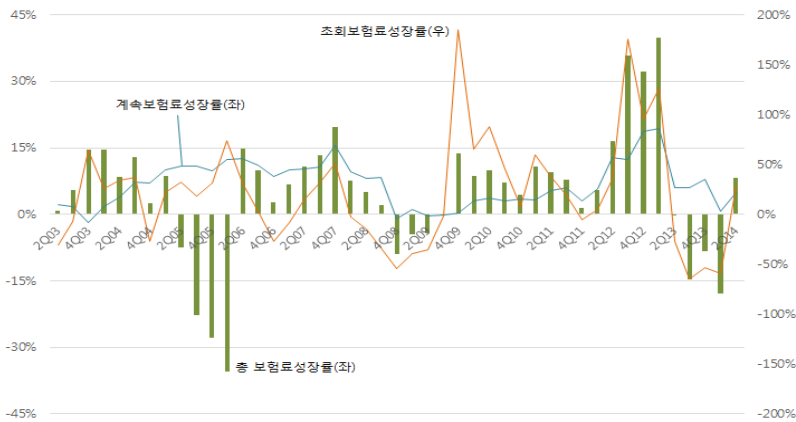
이에 반해 손해보험은 금리확정형 비중이 10.5%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금리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예정이율에 내재된 금리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Ⅲ-6〉 금리확정형 잔여 만기와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 구성비(2012년)



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포함(단,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제외).
 자료: 한국은행(2012).

〈그림 Ⅲ-7〉 보험료 성장률 분기별 추이(2003. 6~2014. 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한편, 경제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보험료 성장이 신계약의 초회보험료가 아니라 보유계약의 계속보험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진다면 금리연동형 판매를 통한 부채듀레이션 축소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들어 보험료 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초회보험료 성장률 둔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 경우 금리연동형 상품 중심으로 부채 구성을 바꾸는 속도도 더더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채듀레이션 축소 정도를 줄이게 된다. 따라서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줄어드는 폭은 기존에 비해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축소 속도는 과거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예상되는 금리역마진 손실을 해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한국은행 2013; 조재린 2012).

2. LAT와 손실계약

가. 생명보험회사 부채 적정성 평가 결과

2013년 보험회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597조 원의 자산 규모로 자본비율 8.4%, RBC 비율은 286%를 나타내고 있고, 매출이익률은 3.8%로 금리역마진 손실을 보전하고도 연간 3조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다. 한편, 장기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의 경우 자산 153조 원, 자본비율 11.1%, RBC 비율 257%를 보이고 있고, 매출이익률은 4.2%로 연간 2조 원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다.

〈표 Ⅲ-1〉 국내 보험산업 주요 지표

(단위: 조 원)

구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독회계	
	자산	자본	LAT 잉여	보험료	순이익	요구	가용
생명	597	50 (8.40%)	29	77	3 (3.80%)	20	58 (286%)
손해	153	17 (11.10%)	20	48	2 (4.20%)	7	18 (257%)

주: 1) 2013년 보험료와 당기순이익은 2013. 4~2013. 12의 3개 분기 실적임.

2)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을 판매하는 일반손해보험회사 실적만 반영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각사, 2013 감사보고서.

또한 2013년 현재의 보유계약이 만기까지 계속 유지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유해야 할 준비금의 현재가치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을 비교한 부채 적정성 평

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결과는 생명보험의 경우 29조 원의 장래이익 (LAT 잉여)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20조 원의 장래이익이 예상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국내 보험산업은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양호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2〉 23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구성별 LAT 결과

2013. 12	유배당		무배당	
	금리확정	금리연동	금리확정	금리연동
A	Y	Y	Y	N
B	Y	Y	Y	N
C	Y	N	Y	N
D	Y	N	N	N
E	Y	N	N	N
F	Y	Y	N	N
G	Y	Y	N	N
H	n.a.	n.a.	n.a.	n.a.
I	n.a.	n.a.	n.a.	n.a.
J	n.a.	n.a.	n.a.	n.a.
K	Y	N	Y	N
L	N	N	N	N
M	Y	N	N	N
N	Y	Y	Y	N
O	Y	Y	N	Y
P	Y	N	N	N
Q	Y	N	Y	N
R	N	N	Y	Y
S	N	N	N	Y
T	Y	N	Y	N
U	N	N	N	N
V	N	Y	N	N
W	N	N	N	N

주: 1) 준비금부족(장래손실)은 “Y”, 준비금 초과(장래이익)는 “N”으로 표시함.

2) 부채평가에 적용된 평균 할인율은 4.75% 전후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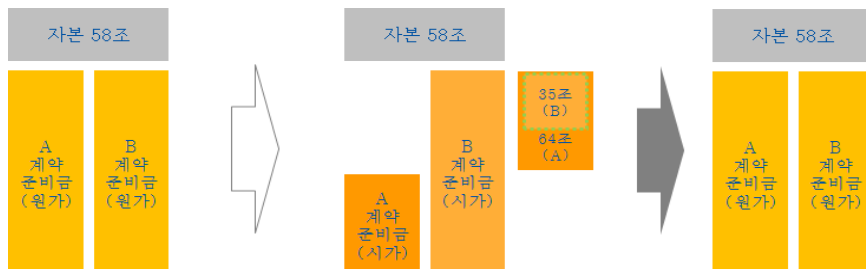
자료: 각사, 2013 감사보고서.

그러나 장래이익의 세부 내용을 보면,⁹⁾ 세부 상품구성별로 편차가 크다. 금리확정형이나 유배당에서는 대체로 장래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금리연동형이나 무배당에서는 장래이익이 예상되는 구조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무배당·금리연동형에서 64조 원의 장래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유배당·금리확정형에서 35조 원의 장래손실이 예상되면서 최종적으로 29조 원이란 장래이익이 보유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예상되는 장래이익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가는 향후 전개될 저금리와 저성장이라는 불리한 경제환경에서 무배당·금리연동형 상품구성의 장래이익이 얼마나 줄어들고 유배당·금리확정형 상품구성의 장래손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에 달려 있다. 게다가 2018년에 예정된 회계규제의 변화(phase 2)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제 및 규제 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낙관하기 어렵다.

나. LAT와 RBC 지급여력 평가

현행 보험회계기준(IFRS 4 phase 1)은 기존의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원가기준 틀을 허용하되 부채 적정성 평가(LAT)를 통해 시가평가와 근사한 방식으로 장부상 준비금의 충분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준비금의 장부가와 시가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Ⅲ-8〉 생명보험의 LAT 결과와 회계처리



자료: 조재린·김해식(2014).

9) 여기서부터는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보험 LAT 결과가 총계로만 공시되고 있어 더 이상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임.

국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LAT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시가와 원가 중 높은 값(Higher of Current Estimate or Cost)을 장부가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가법은 현재의 해약식 준비금이 충분하면 장부상 원가를 그대로 유지하되 재평가한 해약식 준비금의 가치가 장부상 원가보다 클 때는 재평가한 가치로 장부상 원가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의 보험계약을 하나의 상품구성으로 보는 사일로(Silo)방식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35조 원의 장래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이 있더라도, 모든 보험계약을 하나로 간주하여 전체적으로 장래이익이 예상되면 장부상 원가를 수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생명보험회사 감사보고서 중 재무상대표의 보험부채를 수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현재의 LAT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LAT가 RBC 지급여력 평가에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LAT에서 장래결손이 예상되어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여 자본이 감소하더라도 해약식 준비금을 재평가하여 추가 적립한 금액(LAT 추가 적립분)이 가용자본에 다시 합산되므로¹⁰⁾ RBC 지급여력 평가는 LAT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험회계기준 개정안(phase 2) 시행 이후에도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나 별개의 감독회계기준을 가져가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 환경의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P도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IFRS와 별개로 지급여력을 평가하더라도 시가 반영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충분히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조재린 외(2013; 2014)는 “先 시가평가, 後 RBC 강화”를 전제로 LAT의 단계적 강화를 주문하는 로드맵을 제안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로드맵에서 phase 2 준비와 더불어 phase 1의 LAT 강화방안을 제시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가용자본 정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보험업감독규정(제7-1조의1.바.)은 해약공제액과 LAT 평가로 해약식준비금에 추가된 적립금(LAT 추가 적립분)을 가용자본에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이연자산을 차감한 자산에 대응하여 해약공제액을 가용자본에 다시 더해주는 조정과정 이외에 LAT 추가적립금까지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음.

IV. IFRS와 RBC 연계방안

1. 손실계약과 pha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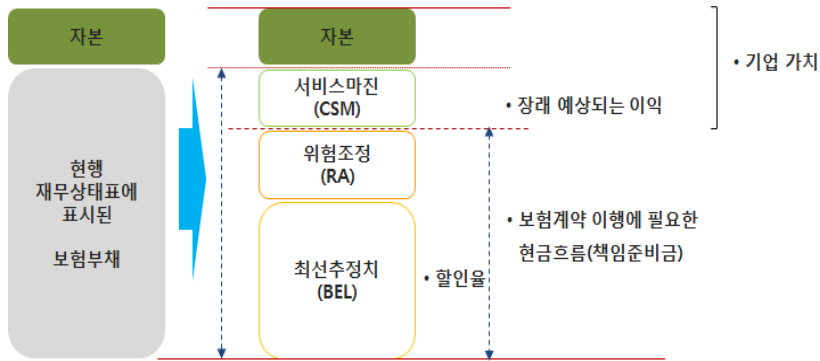
가. 보험부채 시기평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phase 2)은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으로 구분한다.¹¹⁾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RA 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반면, 장래이익(CSM)은 상품개발부터 보험회사가 예상하고 있는 이익이지만,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에 비례하여 매기마다 분할하여 반영하게 된다.¹²⁾

11) "An explicit, unbiased and probability-weighted estimate(ie expected value) of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outflows less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cash inflows that will arise as the entity fulfils the insurance contract, including a risk adjustment, (IASB 2013)"의 용어설명 참조.

〈그림 IV-1〉 보험부채의 시가(IFRS 4 phase 2)



자료: 김해식(2014).

이렇듯 기존의 보험부채 정보를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게 되면, 정보이용자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수준을 파악하기가 보다 용이해지고 재무상태표에서 순자산은 물론 보유계약에서 기대되는 장래이익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전체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phase 2와 손실계약

IFRS 4 phase 2의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phase 1의 LAT와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LAT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시가와 장부가 중 높은 가격만을 보험부채 가치로 선택하므로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만 장부에 반영하지만, phase 2에서는 부채 증가와 더불어 부채 감소도 장부에 반영하게 된다. 둘째, LAT에서 채택된 사일로방식이 phase 2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보험계약은 위험 및 가격결정의 유사성, 그리고 하나의 풀로 관리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동일 상품구성으로 묶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¹³⁾ 이때, 서로 다른 상품구

12) [부록] 참조.

13)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that: (a) provide coverage for similar risks and that are priced similarly relative to the risk taken on; and (b) are managed

성 간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못하며(IASB, 2014a),¹⁴⁾ 손실계약이 있다면 그 손실은 장부에 즉시 반영해야 하므로 자본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

현행 LAT의 손익 상계 관행이 phase 2에서도 계속 인정되려면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 유배당과 무배당을 하나의 상품구성으로 묶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 유배당과 무배당을 하나로 묶는 상품 구분은 phase 2가 제시하고 있는 위험 및 가격결정의 유사성과 단일 관리라는 상품구성의 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품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손익 상계 금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⁵⁾ 현재 국내 보험회사에는 손실계약이 존재하므로 상품구성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장래손실 규모에 차이가 있을 것이나, phase 2에 따라 장래손실은 자본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그림 IV-2〉 보유계약에 대한 시가평가(phase 2)



자료: 조재린 · 김해식(2014).

together as a single pool(IASB 2013)”의 용어설명 참조.

14) IASB는 손실계약(Onerous Contracts)과 정상계약(Profit-making Contracts)의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음.

15) 금융당국의 중합로드맵은 LAT 의제에 상품구성(포트폴리오)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14) 건설적인 대안을 기대함.

phase 2는 보유계약에도 소급적으로 시가평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¹⁶⁾ 2013년 생명보험회사의 LAT 결과를 활용하여 phase 2의 시가평가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LAT와 phase 2의 시가평가기준이 유사하며, 상품구성에는 손실계약과 정상계약의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국내 생명보험의 경우 35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과 64조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계약의 두 가지 상품구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phase 2 시행 시 장래이익 64조 원은 장래손실과 상계되지 않고 CSM과 RA로서 보험부채에 그대로 남은 후, 보험계약의 보장기간 등에 비례하여 손익계산서에 점진적으로 나타나므로 시행 시점에서는 자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35조 원의 장래손실은 phase 2 시행 즉시 준비금을 늘리는 형태로 장부에 반영되므로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35조 원만큼 줄어든 23조 원이 된다.

2. phase 2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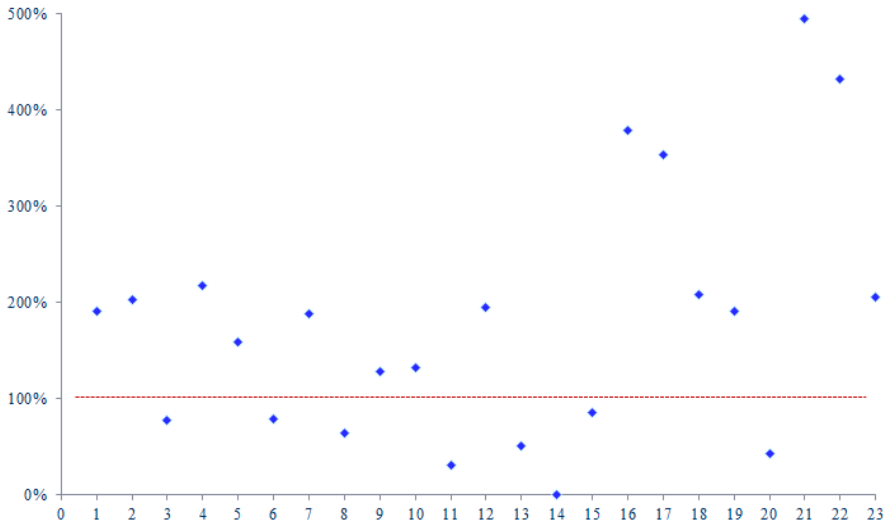
가. 장래결손과 RBC 지급여력 평가

phase 2 회계정보를 RBC 지급여력 평가에서 그대로 반영한다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생명보험의 수익성이나 상품구성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2013년 현재 재무 상태가 2018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phase 2 시행 시 생명보험의 가용자본은 58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감소하고 요구자본은 20조 원이므로 산업 평균 RBC 비율은 phase 1에서 286%(=58/20)이지만 phase 2로 전환 후 115%(=23/20) 수준으로 급락하게 된다.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보면 더 심각하다. phase 2 시행으로 생명보험회사 23개사 중 최소지급여력기준인 RBC 비율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사가 8개사에 달한다. 여기

16) 보유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도 현재 재논의 중에 있음. [부록] 참조.

에 RBC 강화로 인한 요구자본 증가율 30%를 고려한다면¹⁷⁾ 산업 평균 RBC 비율은 89%로 하락하여 최소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회사 수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3〉 장래결손 반영 직후의 지급여력 평가(RBC 강화 영향 배제)



자료: 조재린 · 김해식(2014).

그런데 phase 2를 적용한 손실계약의 준비금은 35조 원의 부족분과 함께 준비금 대비 5% 내의 수준의 RA 7조 원을 추가로 더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⁸⁾ 이 경우 손실 계약으로 인하여 총 42조 원의 자본 감소가 예상되므로 산업 평균 RBC 비율은 115%가 아니라 아예 100%에 미달하게 되고 손실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보험회사의 RBC 비율 악화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7) 현재 진행되고 있는 RBC 강화의 효과는 산업 평균 RBC 비율을 23% 정도 줄일 것으로 예상됨. 23%는 신뢰수준 상향(41%)과 위험구성비(73%)를 고려한 요구자본 증가율 추정치에 따른 것임. 조재린 외(2014) 참조.

18) 이경희(2008)에 따르면, 해외보험시장의 경우 생명보험의 준비금 대비 RA 비율은 1~5% 수준이고 보장성 상품일수록 RA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손해보험의 경우는 최대 7%까지 적용한 사례도 있음. 이에 따라 국내 생명보험의 금리확정형 준비금에 대해서 5%의 RA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했음.

나. LAT를 통한 장래손실 보전

phase 2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의 영향을 최소화할 대안으로서 LAT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phase 2 시행 전까지 장래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RBC 권고비율 150%(=30/20)를 충족하려면 phase 2 시행 전까지 요구자본의 증가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14조 원(=42 - (58-30))의 장래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생명보험산업의 연간 당기순익 3조 원을 전액 내부에 유보하더라도 phase 2 시행 전까지 맞추기 힘든 정도의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RBC 강화계획에 따른 요구자본 증대효과까지 반영할 경우 보험산업 평균 RBC 비율이 100%에 미달하게 되어 LAT 강화 기간을 2018년 이후까지 연장하거나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자의 LAT 강화 기간을 늘려가는 방안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종합로드맵에서 수용되지 않은 방안이고, 후자의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려면 후순위채 발행요건 등에서 제도 개선이 있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조영현 2014).

논의를 종합하면, phase 2 내에서 RBC 비율의 급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자본 확충 이외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도 준비할 기간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본 확충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면 다른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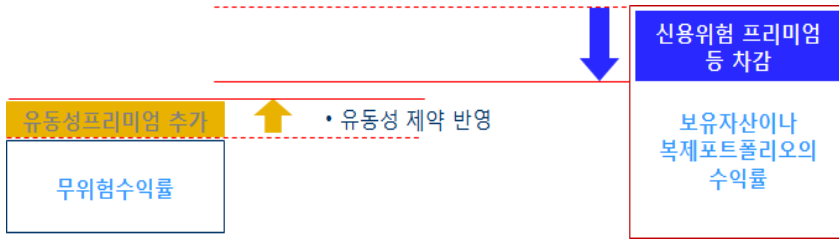
다. 할인율 하락과 지급여력 평가

지금까지 보유계약에 phase 2를 적용하는 데 따른 기존 손실계약의 처리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가장 큰 요소인 할인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할인율 인하 효과는 장기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지금까지 LAT와 관련하여 언급한 장래손실 규모는 할인율 4.75% 전후에서 평가된 수치다. 그런데 phase 2 시행 시점에서 할인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

다. 더구나 할인율의 준거금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아니라 무위험 수익률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림 IV-4〉 phase 2에 의한 시가평가 할인율: 상향식과 하향식



자료: 김해식(2014).

단순하게 보면, 자산운용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의 차이만큼 할인율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phase 2가 제시하고 있는 보험부채 할인율에는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는 유동성 제약을 반영하여 보험회사가 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을 추가하여 할인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⁹⁾ 따라서 유동성프리미엄이 현행 자산운용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의 차이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냐에 따라 할인율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와 가용자본 감소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²⁰⁾

한편, 할인율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의 증가는 자본계정의 포괄손익(OCI)에 할인율 변경효과로 반영되어 자본을 감소시킨다.²¹⁾ 이때, RBC 요구자본에서 보험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에 불과하여 할인율 하락으로 보험부채 규모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가 RBC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재린 외(2014)는 할인율이 3.5% 수준일 경우²²⁾ 다른 모든 조건에 변화가 없더라

19) 할인율의 경우 보험부채 만기를 반영한 이자율 기간구조의 확장이나 유동성프리미엄 산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IASB는 유동성프리미엄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제공을 논의하고 있음(IASB 2014b).

20) Solvency II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5)에서는 0.53~0.82%p 대의 유동성프리미엄을 제시하고 있음. 조재린 외(2014) 재인용.

21) [부록] 참조.

도 단지 할인율 하락만으로도 가용자본 감소에 따라 2개사는 RBC 비율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락하고, 150% 미만인 보험회사 수까지 합하면 모두 5개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IV-5〉 보험부채의 측정과 손익 인식



자료: 김해식(2014).

2000년대에 들어와 장기시장금리가 단기간에 50bp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이와 같은 경우 phase 2의 유동성프리미엄으로는 할인율의 급락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시장금리의 급락이 할인율 급락으로 이어져 보험회사의 부채 시가가 크게 늘어나고 자본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phase 2 정보를 지급여력 평가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지급여력 평가의 경기순응성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평상시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 결과는 phase 2 시행 전에 일종의 할인율 하락 효과를 단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분적인 대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phase 2와 별개로 지급여력 평가를 위한 부채 평가 시 무위험수익률에 추가할 경기완충스프레드와 같은 조정수단을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조재된 외(2014)는 유동성프리미엄을 0.5%p로 설정하고 3% 내외의 장기시장금리(10년 만기 국채)를 반영하여 3.5% 수준을 적용하였음.

지금까지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가 phase 2 정보에 의존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살펴보았으나, IFRS 4 phase 2 안에서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여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급여력 평가 자체 내의 대안 마련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자본 조정을 통한 지급여력 평가

가. phase 2의 장래이익

phase 2는 보험부채를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의 이행현금흐름과 장래이익(CSM)으로 구분한다. 이때, 보험계약에서 “장래이익 < 0 ”이 되어 손실이 예상될 때는 바로 손익으로 반영하고, “장래이익 > 0 ”인 경우에 장래이익을 보험부채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가 제공되지도 않은 보험계약 판매시점에서 장래이익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IASB 2013). 그런데 지급여력 평가에 phase 2 회계정보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보험부채에 포함된 장래이익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phase 2의 자본은 장래손실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급여력 평가에서 phase 2 자본과 함께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의 합산항목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phase 2의 장래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일시납 계약과 같이 이미 보험료가 들어온 부분에서 기대되는 이익(기납입보험료 장래이익)과 분할납 계약과 같이 아직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아 향후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미래보험료로부터 기대되는 이익(미래보험료 장래이익)이다. 일시납이 아닌 신계약의 판매시점이라면 장래이익은 미래보험료 장래이익으로만 구성될 것이나, 보유계약이라면 기납입보험료 장래이익과 미래보험료 장래이익이 섞여 있을 것이다.

이때, 장래이익 중 기납입보험료 장래이익은 당장 이익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요소

이므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²³⁾ 미래보험료 장래이익(EPIFP: Expected Profits in Future Premiums)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보험회사가 대량의 해지사태가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에 처할 경우 계약 유지를 전제로 상정된 미래보험료 장래이익이 장래손실을 보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EIOPA 2011). 그러나 유동성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pillar 2에서 행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도 없다는 의견도 있다(Al-Darwish 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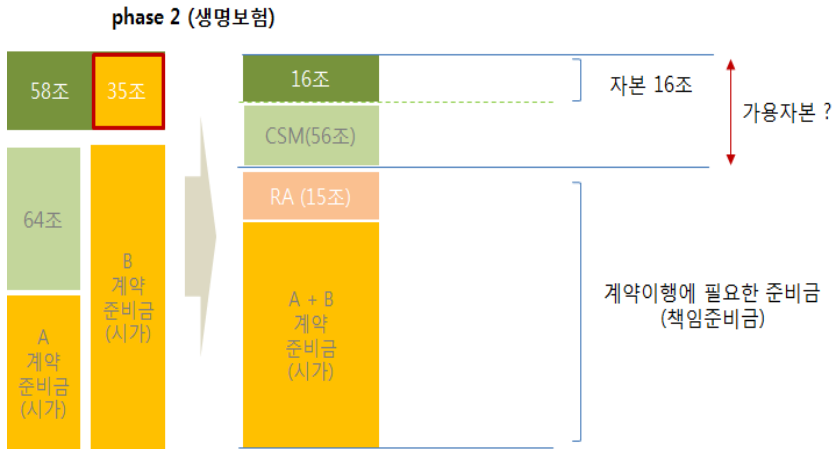
실제로 해외사례를 보면,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등은 미래보험료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그 인정 정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nancial Services Board 2013). 유럽연합의 Solvency II에서 장래이익의 가용자본 인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 역시 미래보험료 장래이익에 관한 논의다. 현재 Solvency II의 계량영향평가에 제시된 지침을 보면, EPIFP를 100%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감독당국(EIOPA)은 EPIFP를 15%까지만 인정한다는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Al-Darwish 외 2011).

나. 장래이익의 가용자본 인정

RBC 지급여력 평가에서 장래손실을 포함하고 있는 phase 2 자본과 더불어 장래이익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경우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래이익을 두 단계로 나눠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1단계는 장래손실을 한도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자본의 일정 비율로 장래이익 인정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23) 실제로 2007년 IFRS 4 phase 2 Discussion Paper에서는 장래이익을 계약시점에서 모두 이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제안된 바 있음.

〈그림 IV-6〉 장래이익의 가용자본 인정



주: 1) 상품구성 A는 장래결손 35, RA 7이 모두 자본 감소로 반영.

2) 상품구성 B의 장래이익 64조는 RA 8, CSM 56으로 배분.

자료: 조재린 · 김해식(2014)을 수정 인용.

먼저, phase 2에 반영된 장래손실을 한도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지급여력 평가 시 장래손실에 따른 자본 감소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는 IFRS 4 phase 1에서 phase 2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유계약에 시가평가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손실계약 문제가 지급여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경우 자본은 phase 2 시행 전 58조 원에서 시행 후 16조 원으로 줄어들지만, 가용자본은 51조 원(=16+35)이 되므로 산업 평균 RBC 비율은 RBC 강화효과를 반영하더라도 196%를 유지하게 된다. 물론 종합로드맵에서 제시된 대로 LAT 강화를 통해 장래손실을 조기에 반영하여 향후 할인율 효과에 따른 RBC 비율의 하락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 자본의 질적 구성 제고

경제적 자본 관점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적용할 경우 보험회사의 자본구조는 phase 2의 장래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럽 보험회사의 경제적 자본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보험종목을 취급하는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유계약의 평균 내재가치(VIF: Value In-Force) 비중이 38%로 가장 높다. 자본 구성의 금리민감도 측면에서 보면, VIF와 평가손익을 합쳐 전체 자본의 55%가 금리 변동에 노출되어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한 자본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본자본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Picangne, Tam 2014).

〈표 IV-1〉 유럽 보험회사의 자본 구조와 금리민감도

(단위: %)

구분	평균	겸업보험사	재보험사	생명보험사
연성자본	72	83	33	94
후순위채	22	23	16	25
평가손익	17	23	10	10
내재가치(VIF)	38	40	11	68
이연법인세자산	5	-3	-4	10
구분	평균	겸업보험사	재보험사	생명보험사
가공자본	57	72	33	47
영업권	24	32	17	10
이연신계약비	30	36	14	37
기타	3	4	2	1

주: 1) 주주지분 대비 비율.

2) 주주지분은 연결재무제표의 비지배주주지분과 IFRS에서 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영구채권 등을 차감한 값임.

자료: Picangne, Tam(2014).

phase 2의 장래이익은 VIF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EIOPA 2011), 보험회사 지급여력 평가에 장래이익을 반영할 경우 국내 보험회사의 자본 구조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phase 2의 정착 이후에는 장래이익의 구성 중 가공자본 논란이 있는 미래보험료 장래이익과 자본구조의 금리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장래이익의 인정 한도를 장래손실이 아니라 기본자본의 일정 비율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까지 자본 확충이 없다면, 제1단계와 같은 장래이익 인정방식에서는 생명보

험의 경우 장래이익이 자본의 69%(=35/51)를 차지하게 되어 금리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이게 된다. 이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익으로 인하여 RBC 비율 변동이 커진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여력 감독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제2단계에서는 기본자본의 일정 비율 한도로 장래이익을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자본 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자본조달수단과 위험경감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고(조영현 2014), 여기에는 향후 장래이익의 증권화 또는 유동화 논의(Swiss Re 2006)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 보고서에서 주제로 삼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로드맵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질문은 ‘국내 보험산업이 IFRS 4 phase 2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가’, ‘IFRS를 채택하지 않은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이다. 다음으로는 ‘IFRS와 지급여력 평가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보다 기술적인 질문으로, 그 내용은 phase 2 적용이 지급여력 평가에 가져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IFRS-RBC 연계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제Ⅱ장 자본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서,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제Ⅳ장 IFRS와 RBC 연계의 영향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자 했다.

첫째, 일반회계(IFRS)와 감독회계(ICP) 모두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추구하고 있어 RBC 지급여력 평가가 IFRS 정보를 채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의 국제적인 흐름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ICP 규제 환경은 IFRS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다. 이는 IFRS를 채택하지 않은 미국, 일본, 중국의 지급여력제도 개혁 작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SMI, 일본의 RBC 개혁, 중국의 C-ROSS는 모두 ICP와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로드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 금융당국이 제시한 종합로드맵에도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ICP 준수 평가와 phase 2 시행 시기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이 보고서는 IFRS 시가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평가한다는 전제에서 제Ⅲ장의 국내 보험산업이 처한 상황과 손실계약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IFRS-RBC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IFRS 자체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RBC의 가용자본 조정을 통해 IFRS가 RBC 지급여력 평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지급여력 평가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IFRS와 RBC 두 측면에서의 접근이 모두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IFRS 측면에서 phase 1의 LAT에 대한 단계적 강화다. 금융당국의 종합로드맵이 제시하고 있는 LAT 강화는 보험산업이 phase 2 시가평가로 유연하게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RBC 지급여력 평가의 가용자본 정의를 재검토하여 보험부채 재평가와 RBC를 연계하고, LAT와 phase 2의 차이인 손익상계와 관련한 상품구성 기준의 재검토와 할인율을 포함한 평가기준의 조정을 통해 장래손실이 미칠 영향과 할인율 효과에 대한 보험회사의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다만, LAT 단계적 강화는 RBC 강화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재무적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LAT 단계적 강화는 그 재무적 부담을 한번에 지우지 않고 미리부터 나눠서 준비시키자는 것이지만, 준비기간이 3~4년에 불과하여 보험회사가 LAT 강화를 통해서 준비기간 내에 phase 2 영향을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RBC 측면에서 RBC 지급여력 평가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phase 2는 장래손실을 반영한 자본정보와 장래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부채정보를 RBC 지급여력 평가에 제공한다. 이때, 장래이익이 장래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한 보험부채에 포함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두 단계의 장래이익 인정방안을 제안한다. 첫 단계로, 2018년 phase 2 시행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시행 시 장래손실 규모를 한도로 장래이익을 인정하여 새 지급여력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지급여력제도 정착에 따라 장래이익의 인정 한도를 기본자본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여 가용자본의 금리민감도를 줄이고 자본 구성의 질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금리의 일시적인 변동이 부채 급증과 자본 급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인율에 관한 조정수단을 금융당국이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시장참여자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도록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더 많은 자본 보유를 요구하고, 시장경쟁보다 보험금 지급능력을 우선하는 감독을 해 왔다. 보험회사는 자사 상품이 가진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위험에 적합한 상품을 시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장이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와 장래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부실한 보험회사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사안을 금융당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시장 경쟁은 미흡하고 감시도 충분하지 않으며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아야 하는 보호대상자에 불과하다. 그 결과, 보험료 인상은 억제되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은 많지 않고 불완전판매는 줄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에 더 많은 자본이 요구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자본조달이 쉽지 않고 과거에 판매한 손실계약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게다가 규제 형성 과정에서 준수자인 보험회사와 제정자인 금융당국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 이제는 시장경쟁과 재무건전성 규제가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14),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로드맵(시안)』.
- _____ (2013), 『보험회사 연결방식 지급여력(RBC)제도 시행계획』.
- _____ (2012a), 『보험회사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해설서』, 업무참고자료.
- _____ (2012b), 『보험회사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RAAS) 해설서』, 업무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7. 3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 마련」.
- 김석영(2014),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보험회사 CEO 초청 조찬회, 보험연구원.
- 김해식(2014), 「IFRS 보험부채 시가평가의 현안과 과제」, 리스크관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김해식 · 조재린(2013),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정책심포지엄,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보험연구원.
- _____ (2012),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및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 김해식 · 조재린 · 김혜란(2014), 『보험회사 지급여력 평가: IFRS 활용과 과제』, Working Paper, 보험연구원.
- 문홍철 · 이병건(2013), 「RBC 규제 강화, 보험사 장기채 수요 유지될 것」, 동부채략 · 채권, 동부증권.
- 이경희(2008),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IBR, 27, 보험연구원.
- 이승준(201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 지정의 의미와 시사점」,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 _____ (2012), 「공통감독체계 2차년도 보고서의 의미와 시사점」,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 이승준 · 오병국(2011), 「IAIS 공통감독체계 논의와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 이원돈(2003), 「저금리시대의 생명보험산업」, 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 조영현(2014), 『보험회사의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
- 조재린(2012), 『저금리 시대, 보험산업 현황과 과제』, 저금리 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 세미나, 금융위원회 · 보험연구원.
- 조재린 · 김석영 · 김해식(2014), 『보험회사 지급여력 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 보고서, 보험연구원.
- _____ (2013),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현재와 미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2020 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
- 조재린 · 김해식(2014),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IFRS와 RBC 연계방안』, 정책 세미나, 보험연구원.
- 한국은행(2013), 『금융안정보고서』, 4월.
- _____ (2012), 『금융안정보고서』, 10월.
- KB리서치(2014), 『월간 채권탐구』, 9월호, KB투자증권.
- Al-Darwish, A., hafeman, M., Impavido, G., Kemp, M. and O'Malley, P. (2011), "Possible Unintended Consequences of Basel III and Solvency II", IMF Working Paper, WP/11/187, IMF.
- Baltensperger, E., Buomberger, P, Lupp, A. A., Keller, B. and Wicki, A. (2007), "Regulation and Interven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 Fundamental Issues", Zurich.
- Deloitte(2014), "The Start of Joint Deliberations Process Is Marked by the FASB Decision to Set a Narrower Course for the US Insurance Accounting Project", Insurance Accounting Newsletter, 29.
-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8), "From Burden to Benefits: Making the Most of Regulatory Risk Management".
- EIOPA(2011),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xpected Profits Arising from Future Premiums", EIOPA-TFEPIFP-11/003.

- Financial Services Board(2013), "Treatment of Expected Profits Included in Future Cash flows as a Capital Resource", Solvency Assessment and Management: Steering Committee Position Paper 28, South Africa.
- Financial Stability Board(FSB 2013),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 and the Policy Measures That Will Apply to Them".
- Finnegan, P.(2013), "The Long and Winding Road: the IASB's Project on Insurance Contracts", Investor Perspectives, September, IFRS Foundation.
- IAIS(2013), "IAIS Commits to Develop by 2016 a Global Insurance Capital Standard", Press Release.
- IASB(2014a), "IASB Staff Paper: Effect of Board Redeliberations on the 2013 Exposure Draft Insurance Contracts".
- _____(2014b), "IASB Staff Paper: Determining discount rates when there is lack of observable data", IASB Agenda ref 2A.
- _____(2014c), "How We Respond to Feedback on the 2013 Exposure Draft".
- _____(2013), Exposure Draft ED/2013/7 Insurance Contracts: A Revision of ED/2010/8 Insurance Contracts.
- IMF(2014a), Republic of Korea: Financial Sector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14/126.
- _____(2014b),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IMF Country Report, 14/127.
- Khang, H.(2014),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Market and Their Implications to the Risk Management", Insurance Seminar, Waseda University.
- Milliman(2014), "Capital Management in a Solvency II World".
- NAIC(2013), "U.S. Insurance Regulators' Views: IAIS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ComFrame".
- Osinski, J., Seal K. and Hooguin, L.(2013), "Macroprudential and Microprudential

- Policies: Cohabitation”, IMF Staff Discussion Note, SDN 13/05, IMF.
- Picagne, P. and Tam R.(2014), “Euro Insurers: Economic Capital – Data Crunching”, CreditSights.
- PwC(2010), “IFRS for Insurance Contract: Actuarial Perspective”.
- _____(2013), “Practical Guide to IFRS: Revised Exposure Draft Will Significantly Change Accounting for Insurance Contracts”.
- Schneider, T., Bielman, P. and Dornheim, H.(2014), “Case Study: Potential Impacts of IFRS 4 phase II on Non-life Insurance Accounting”, KPMG.
- Severinson, C. and J. Yermo (2012), “The Effect of Solvency Regulations and Accounting Standards on Long-Term Investing: Implications for Insurers and Pension Funds”,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30, OECD Publishing.
- Swiss Re(2012), “Insurance Accounting Reform: A Glass Half Empty or Half Full?”, Sigma, 6/2012.
- _____(2010), “Insurance Investment in a Challenging Global Environment”, Sigma, 5/2010.
- _____(2006), “Sensitization - New Opportunities for Insurers and Investors”, Sigma, 7/2006.
- _____(2004), “The Impact of IFRS on the Insurance Industry”, Sigma, 7/2004.
- Vaughan, T.(2009), “The Implication of Solvency II for U.S. Insurance Regulation”, Networks Finance Institute, Indiana State University.
- Zhang, J.(2013), “Solvency Regimes: Trend & Case Studies”,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2020, 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
- IAIS ICP(<http://www.iaisweb.org/ICP-on-line-tool-689>).

부록 : 보험부채 측정 예시 및 이행규정

1. 보험부채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에 대한 예시

■ 하나의 상품구성을 형성하는 보험계약 판매 시 계약이행에 필요한 현금흐름과 장래예상이익은 재무상태표에 보험부채로 표시

- 계약이행에 필요한 현금흐름(책임준비금)은 현금유출현가에서 현금유입현가를 차감하고 위험조정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장래이익(서비스마진)을 산출하여 전체 보험부채를 산출

〈 예시 1: 최초 측정 〉²⁴⁾

- 보험료 900, 위험조정 30, 현금유출의 기대비용은 (사례1)과 (사례2)
 - 1차년도 연납 보험료 300을 수취하여 신계약비 120을 지급
 - 현금흐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 신계약비 30은 당기비용으로 반영
 - (사례1) 기대보험금 600, 신계약비 120(직접 90, 간접 30)
 - (사례2) 기대보험금 900, 신계약비 120(직접 90, 간접 30)
- (사례1) 기대현금유출현가는 690, 현금유입현가는 900, 위험조정 30
 - 이행현금흐름은 “ $690 - 900 + 30 = -180$ ”, 즉 180만큼의 장래이익이 예상되므로 이행현금흐름과 CSM을 합친 보험부채는 “0”임.
 - 이때, 제1차년도 연납보험료 300이 납입되면, 현금유입현가는 900에서 600이 되고 현금유출현가는 690에서 직접 신계약비 90이 지출된 600이 되므로 이행현금흐름은 “ $600 - 600 + 30 = 30$ ”이 되고,

24) Finnegan(2013) 참조.

- 장래이익 180과 이행현금흐름 30을 합친 “210”이 재무상태표에 보험부채로 인식되고, 간접 신계약비 30은 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됨.
- (사례2) 기대현금유출현가는 990, 현금유입현가는 900, 위험조정 30
 - 이행현금흐름은 “ $990 - 900 + 30 = 120$ ”, 즉 계약체결 시점에서 이행현금흐름이 120만큼 추가로 필요한 손실계약으로 CSM은 “0”
 - 이때, 제1차년도 연납보험료 300이 납입되면, 현금유입현가는 900에서 600이 되고, 현금유출현가는 990에서 직접 신계약비 90이 지출된 900이 되므로 이행현금흐름은 “ $900 - 600 + 30 = 330$ ”
 - 동 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120”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30”의 간접 신계약비와 함께 120 손실을 인식하고 보험부채 “330”을 인식

〈부록 표 1〉 보험부채의 최초 측정 예시

보험회사	사례 1		사례 2	
	최초발행	1차 보험료	최초발행	1차 보험료
현금유출현가	690	600	990	900
현금유입현가	(900)	(600)	(900)	(600)
위험조정(RA)	30	30	30	30
이행현금흐름	(180)	30	120	330
장래이익(CSM)	180	180	0	0
보험부채	0	210	120	330
최초 손실	-	0	-	(120)
간접신계약비	-	(30)	-	(30)
당기 손익	-	(30)	-	(150)

자료: IASB(2013), 예시 1.

■ 보험부채는 매기마다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가정을 갱신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부채의 변화는 당기손익과 포괄손익의 변동을 초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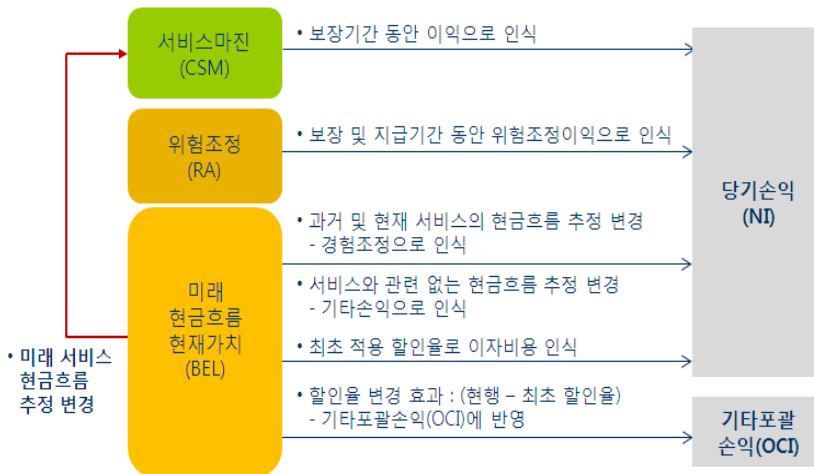
○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흐름의 추정 변경 효과는 당기손익이나 포괄손익에 반영함.

- 현금흐름의 변경 효과는 기본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나, 할인율 변경

효과는 기타포괄손익(OCI: Other Comprehensive Income)으로 인식함.

- 현행 이자율과 최초 할인율의 차이를 반영하는 할인율 변경효과는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계약자에게 약속한 이자비용은 최초 할인율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또한 현금흐름 추정 변경의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미래 추정 변경은 CSM과 우선 상쇄한 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과거 및 현재 추정 변경은 당기 경험조정으로 인식하며, 서비스와 관련 없으면 기타손익으로 인식함.²⁵⁾

〈부록 그림 1〉 경영성과의 표시



〈 예시 2: 후속 측정 〉

- 현금유출의 기대비용이 갱신 시점에서 최초 추정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 보험 부채의 변경 효과와 변경효과가 경험조정이나 CSM 조정으로 이어지는 손익 인식이 필요
- 보장기간 3년에 일시납 보험료 900 수취, 위험조정과 사업비, 시간가치는 무시함.

25) 미국 FASB는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변경이 복합마진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음.

- 최초 추정 시 매년 기대보험금은 200씩 3년간 총 600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나, 2차년도 이후 기대보험금은 예상보다 많은 450씩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CSM은 보장기간 3년에 걸쳐서 균등하게 인식함.

〈부록 표 2〉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갱신 측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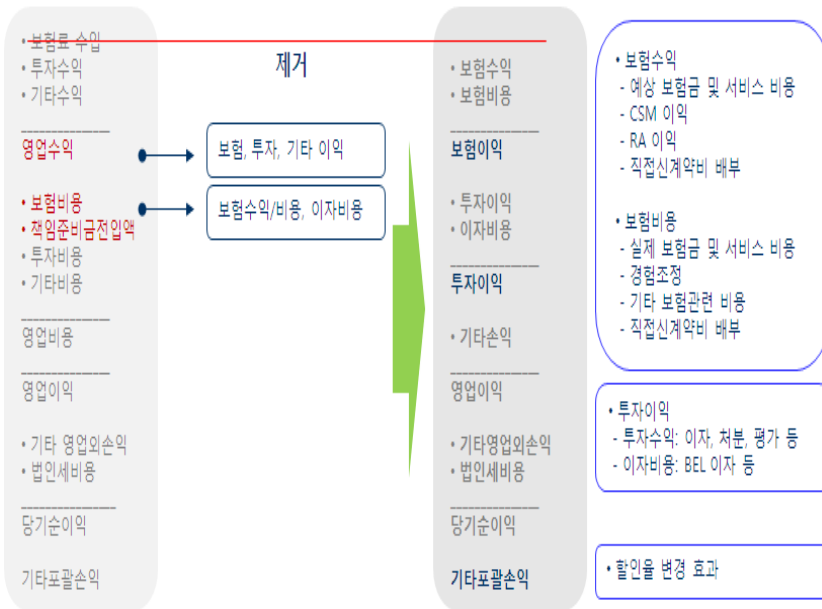
구분	최초 발행	20X1	20X2	20X3
예상 현금유출	600	400	450	0
예상 현금유입 (일시납)	(900)	0	0	0
이행현금흐름	(300)	400	450	0
서비스 마진	300	200	0	0
보험부채	0	600	450	0
1. 서비스 마진 조정	최초 발행	20X1	20X2	20X3
기초		300	200	0
당기손익에서 인식		(100)	(100)	0
미래현금유출 추정 변경		0	(100)	0
기말	300	200	0	0
2. 당기손익	합계	20X1	20X2	20X3
서비스 마진 변동	200	100	100	0
서비스 마진 초과 손실	(150)	0	(150)	0
당기경험조정(예상-실제)	(250)		(250)	
당기손익	(200)	100	(300)	0

자료: IASB(2013), 예시 6.

- (최초 측정) 보험부채의 인식은 이행현금흐름 “ $600 - 900 = -300$ ”, 즉 300만큼의 장래 이익(CSM)이 예상되므로 보험부채는 “0”임.
- 제1차년도 말 현금유입현가는 0이 되고, 1차년도 중 지급된 보험금이 200이므로 현금유출현가는 400으로 이행현금흐름은 “ $400 - 0 = 400$ ”,
- CSM 300 중 1/3에 해당하는 100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 부채에 남은 CSM은 200이 되어 1차년도 말 보험부채 총액은 600이 됨.
- (2차년도 말) 그러나 2차년도 중에 예상과 달리 보험금이 450 지출되어 250의 경험손실이 발생하였고, 3차년도에 250의 추가 손실이 예상됨.

- 따라서 당기 250은 경험조정으로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 3차년도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변경 효과 250 손실은 우선 CSM 잔고로 보전하고, CSM을 초과하는 손실은 당기손실로 인식함.
- 결국 3차년도에 대비한 이행현금흐름은 “450 - 0 = 450”이 되고, CSM은 “0”이므로 2차년도 말의 보험부채는 450임.

〈부록 그림 2〉 phase 1과 phase 2의 손익계산서 비교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3) 수정 인용.

- 부채시가평가의 손익정보는 장래이익과 위험조정으로부터 매기 인식된 보험수익에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과 신계약비 등 보험비용을 차감한 보험영업정보와 투자이익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하여 투자영업정보를 제공
 - 현행 손익정보는 예치금이 섞인 보험금으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않고, 다른 금융권과 비교도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반면, 새로운 손익정보는 보험영업과 투자영업별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제공하고, 할인율 변경효과에 대해서는 포괄손익으로 제공함.

- 그러나 보험영업 수익이 회사의 매출 규모와 성장을 보여주는 수입보험료와 연계되지 않아 보험료 정보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음.

2. 보유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이행규정(Effective date and transition)²⁶⁾

■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임.

■ 효력 발생일

- C1. 이 기준서는 기준서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거나 그 이후의 회계기간에 적용되며 조기 적용도 가능함.

■ 이행규정

- C2.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할 때 C3~C12를 적용하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기준서 IAS 8(회계추정 및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름. 따라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회계정책의 누적효과를 반영하여 개정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해(이행기)의 기초 이익잉여금을 조정하고, 가능하다면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도 조정함.

- C3. 개정 기준서를 처음 적용할 때(이행 시점), 이익잉여금 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함.

- (a) 보험계약과 관련한 이연신계약비를 제거
- (b) 기존에 인식한 기업인수에서 떠안은 무형자산 제거하고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무형자산도 제거

26) IASB(2013)의 Appendix C,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c) IFRS 4 (보험계약)에 따라 인식되었던 자산과 부채, 그리고 (a) 또는 (b)에 따라 제거된 자산과 부채를 기준서 IFRS 3 (인수합병)에 따라 인식함.

(d) 보험계약군은 다음의 (i)과 (ii)의 합으로 측정

(i) 이행현금흐름과

(ii) C4-C6에 따라 결정된 장래이익

(e) 개정 기준서 처음 적용 시 현금흐름 기대현가들 간 차이의 누적효과를 자본의 별도 항목에 반영하는 데, 이때

(i) 문단 25에 따라 결정된 현행 할인율과

(ii) 문단 C6에 따라 결정된 최초 포트폴리오에 적용된 할인율을 이용하여 할인

C4. 문단 C5가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기준서 IAS 8에 따라 이 개정 기준서를 소급하여 개정 기준서 처음 적용 시점의 보유계약을 측정함.

C5. 기준서 IAS 8은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소급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개정 기준서 적용 시점에서,

(a) 보험부채를 다음 (i)과 (ii)의 합으로 측정함.

(i) 개정 기준서에 따른 이행현금흐름

(ii) 잔존 장래이익 추정치, 이때 추정치는 문단 C6에 따라 결정된 최초 인식 시점의 기대치 정보를 이용함.

(b) 개정 기준서 적용 후의 보험계약 손익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단 C6에 따라 잔존 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부채 장부가(The carrying amount of the liability for the remaining coverage)를 추정하는 데, 이때 다음 항목을 제외함.

(i) 최초 인식 시 손실

(ii) 최초 인식 이후 이행 시까지의 추정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

(c) 당기손익에 반영할 이자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문단 C6에 따라 포트폴리오 최초 인식 시 적용된 할인율을 결정

C6. 문단 C5를 적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보다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면 충분함.

- (a) 최초 기대현금흐름의 추정치는 이행 시점의 기대현금흐름을 최초 시점과 이행 시점 간 알려진 현금흐름으로 조정함.
- (b) 최초 위험조정의 추정치는 이행 시점에 측정된 위험조정과 동일한 금액으로 함. 따라서 최초 시점과 이행 시점 간 변화를 반영하여 위험조정을 조정하지 않음.
- (c) 관찰 가능한 수익률 곡선을 이용하여 최초 시점에 적용된 할인율을 추정하는데, 이때 관찰 가능한 수익률 곡선은 이행 시점 직전 최소 3년 기간을 이용하여 문단 25~26과 문단 B69~75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 곡선을 근사한 것임.
- (d) 그러나 (c)의 관찰 가능한 수익률 곡선이 없다면, 관찰 가능한 수익률 곡선과 문단 25~26과 문단 B69~75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 곡선 간 평균스프레드를 결정하여 최초 적용된 할인율을 추정함. 그 스프레드를 관찰 가능한 수익률 곡선에 적용함. 이때 평균 스프레드는 최소한 이행 시점 직전의 3년 평균임.

■ 정보공시

C8. C3~C6에 따라 측정된 보험부채에 대해서는 기준서 IAS 8 공시요건에 추가하여 다음을 공시하여야 함.

- (a) 개정 기준서가 소급 적용된 포트폴리오의 최초 인식 시점
- (b) 문단 C3~C6이 적용되는 포트폴리오를 문단 83~85와 별개로 공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 (i), (ii)와 같음.
 - (i) 문단 C5~C6에 따라 결정된 장래이익과 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
 - (ii) 문단 C6에 따라 결정된 할인율

C9. 문단 90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기준서를 처음 적용한 재무제표 기말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발생한 손해액 진전에 관한 미공표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으나, 공시하지 않았음을 공시해야 함.

C10. 당기와 직전연도에 대해 기준서 IAS 8의 문단 28(f)이 달리 요구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은 개별 항목 조정사항을 공시할 필요는 없음.

■ 금융자산의 재지정

C11. 개정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이행 시점 기초에 금융자산을 재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님.

(a) 금융자산이 기준서 IFRS 9의 문단 4.1.5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을 재지정할 수 있음.

(b) 이전에 IFRS 9를 적용했다면,

(i) IFRS 9의 문단 5.7.5에 따라 투자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된 지분상품으로 재지정하여 OCI에 반영

(ii) IFRS 9의 문단 5.7.5에 따라 OCI 반영 지분상품투자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음.

C12.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회계적 불일치가 제거된다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지정을 철회해야 함.

■ 기준서 대체

C13. 개정 기준서는 2004년에 발간된 현 기준서(IFRS 4)를 대체함.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정아, 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만규,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운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운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정환, 강민규, 이해량 2014.8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김 해 식

St. John's University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aeskim@kiri.or.kr)

조 재 린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jrincho@kiri.or.kr)

이 경 아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lka@kiri.or.kr)

정책보고서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발행일 2015년 2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18-3 94320

979-11-85691-03-9(세트)

정가 10,000원